

<첨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수당 수급권 보호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합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18년 11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략)

4. 생계비·교육비 등 자립 생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의 지원**

- (개정내용)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대상에 추가

□ 시행일 : '19.4.4.

※ 시행령은 '20.1.1. 시행이나,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위해 '19.4.부터 업무 개시 예정(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보건복지부 기협의 사항)

<별첨1>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별첨2>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안) 전문 1부. 끝.

<별첨1>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가입대상) 1. ~ 12. (생략) <u><신설></u>	제3조 (가입대상)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u>자립수당 수급권자</u>	

<별첨2>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개정 12.12.3>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12.5.16, 12.12.3, 14.8.20, 14.11.21, 15.9.1, 17.7.10, 18.8.9., 18.12.17, **19.4.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삭제 15.9.1>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권자
7.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급여 수급권자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권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권자
10.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공제금 수급권자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 13.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제4조(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5조(거래제한) ①이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②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③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제6조(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과목에 따라 「저축예금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15.9.1>

제7조(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15.9.1>

제8조(수수료 혜택)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②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③납부자자동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④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부 칙

이 약관 제3조 제10호는 2018. 9. 1부터, 제3조 제11호는 2018. 9. 13.부터 시행한다.

<별첨1>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가입대상) 1. ~ 12. (생략) <u><신설></u>	제3조 (가입대상)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u>자립수당 수급권자</u>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개정 12.12.3>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12.5.16, 12.12.3, 14.8.20, 14.11.21, 15.9.1, 17.7.10, 18.8.9., 18.12.17, **19.4.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삭제 15.9.1>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권자
7.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급여 수급권자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권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권자
10.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공제금 수급권자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 13.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제4조(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5조(거래제한) ①이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②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③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제6조(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과목에 따라 「저축예금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15.9.1>

제7조(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15.9.1>

제8조(수수료 혜택)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②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③납부자자동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④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부 칙

이 약관 제3조 제10호는 2018. 9. 1부터, 제3조 제11호는 2018. 9. 13.부터 시행한다.